

# 『문화교차연구』 논문심사 규정

2024 9월 1일 제정

**제1조 (명칭)** 이 규정은 ‘『문화교차연구』 논문심사 규정’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규정은 국민대학교 문화교차연구소 발행 학술지 『문화교차연구』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에 관한 절차를 정하고 관련 업무를 명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논문심사 대상)** 본 학술지에 게재하는 논문은 모두 본 규정의 심사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제4조 (심사위원 선정 및 위촉)

-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마감일이 지난 뒤 즉시 편집위원회를 소집하고,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심사위원장 포함)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을 심사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공자로서 박사 학위가 있어야 한다. 단 해당 분야의 전공자가 부족하거나 다른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인접 분야의 전공 학자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논문 투고자와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투고자의 지도교수, 친족 등) 또는 논문심사에 불공정 시비가 우려되는 자는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 결과서’가 부실하다고 판단될 경우, 다른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다시 위촉한다.

## 제5조 (심사의 공정성 유지)

- 논문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투고자의 인적 사항을 일절 밝히지 않는다.
- 심사위원의 인적 사항도 일절 공개하지 않는다.
- 편집위원회의 구성원이 논문을 투고했을 경우에는 투고 담당자가 궐석한 상태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심사에 관한 모든 사항은 편집위원장 책임하에 대외비로 한다.

## 제6조 (심사 절차)

- 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 1편당 3인의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위촉한다.
- 각 논문의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본 연구소의 『문화교차연구』 투고논문 심사 결과서(별첨 소정 양식)의 서식에 따라 평가하여, 항목별 평가, 평가 총점, 판정 의견, 판정 결과 등을 상세히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3.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 3인이 제출한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심사 결과에서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의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며, 수정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그 내용을 투고자에게 통보한다.
5. 심사 결과 '재심의'는 수정 요구 사항을 반영한 수정 결과를 다시 심사하여 판정한다.
6. 심사 결과에서 '반려' 판정을 받은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의견을 검토하여 투고자에게 통보하고 논문을 반려한다.
7.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의 경우, 투고자는 심사위원의 판정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원고를 마무리한 뒤, 최종 수정 파일을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편집위원회에서는 수정을 요구한 사항이 성실히 이행되었는지 확인한다.

#### 제7조 (심사 기준)

1. 심사 결과는 『문화교차연구』 투고논문 심사 결과서』에 따라 항목별 평가, 평가 총점, 판정 의견, 판정 결과로 나누어 작성한다.
2. 항목별 평가는 ① 문화교차학을 기초로 한 논문 정도 ② 논리 전개와 정합성, ③ 연구의 창의성, ④ 학문적 기여도, ⑤ 연구 방법 및 결론의 타당성 등 다섯 가지 기준에 따라 하며, 매 항목 2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3. 총점에서 80점 이상인 경우, '게재'로 판정하고, 60점 이하인 경우 '반려'로 판정한다. 단 61~79점은 수정 후 재심사하여 판정한다.
4. 심사 의견은 항목별 평가, '게재'와 '반려'에 대한 근거 및 의견을 총괄적으로 기술한다. 그리고 수정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 제8조 (게재 결정) '게재'와 '반려'의 결정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게재' 결정을 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의견을 검토하여 '게재'로 결정한다.
2.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이 모두 '반려' 결정을 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는 그 판정 의견을 검토하여 '반려'로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심사위원 3인의 판정 의견이 서로 다를 경우, 심사위원장의 판정 의견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4. 본 연구소에서 주관하는 학술대회에서 기획된 주제에 따라 발표와 토론을 거친 기획 논문의 경우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다.

#### 제9조 (논문 게재 순서) 심사를 통과한 논문 편수가 과다하여 해당 호에 모두 게재할 수 없을 경우, 기획 발표 논문을 먼저 게재하고, 일반투고 논문은 『문화교차연구』 투고논문

심사 결과서'의 점수가 높은 순으로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적절한 편수를 게재하되, 게재하지 못한 논문은 다음 호에 우선하여 게재한다.

**제10조 (이의 신청)** 논문 투고자는 논문심사 및 논문 게재 여부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이의신청서(별도의 양식 없음)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투고자의 논문에 대해서는, 편집위원회에서 내용을 자세히 검토한 후 결과를 투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날짜 부기)** 심사를 통과하여 게재가 결정된 논문은 투고된 날짜, 심사 기간, 게재가 결정된 날짜를 논문의 뒤에 부기한다.

**제11조 (부칙)** 본 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첨부** : 『문화교차연구』 투고논문 심사 결과서 (양식)

『문화교차연구』 투고논문 심사 결과서

심사 일자		심사자	(인)
논문 제목			
구 분	심 사 항 목	점 수	
항목별 평가	1. 문화교차학을 기초로한 논문 정도		
	2. 논리 전개의 정합성		
	3. 연구의 창의성		
	4. 학문적 기여도		
	5. 연구 방법 및 결론의 타당성		
평가 총점			
판정 의견			
판정 결과	게재(     ), 반려(     ), 재심의(     )		